

#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,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)
-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[별표]에 반영함(안 제3조제1항, [별표])

- 자백사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소송 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이행권고결정을 추가함(안 제5조)

#### 4.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보수액”을 “보수액(다음부터 ‘지급보수액’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보수는,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”을 “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,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청구취지”를 각각 “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무변론 판결”을 “무변론 판결, 이행권고결정”으로, “제3조”를 “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,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”로 한다.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|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       |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300만원까지 부분               | 30만원                 |
| 300만원을 초과하여 2,000만원까지 부분 | 10%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|
|--|------|
| [3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300만원) x $\frac{10}{100}$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2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<br>[20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x $\frac{8}{100}$ ] | 8%   |
| 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<br>[4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x $\frac{6}{100}$ ]     | 6%   |
|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<br>[7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 x $\frac{4}{100}$ ]          | 4%   |
|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<br>[9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5천만원) x $\frac{2}{100}$ ]       | 2%   |
|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<br>[1,0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원) x $\frac{1}{100}$ ]           | 1%   |
|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<br>[1,3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억원) x $\frac{0.5}{100}$ ]               | 0.5% |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3조(산입할 보수의 기준)</p> <p>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<u>보수액의 범위 내에서</u>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 <u>다만,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가압류, 가처분 명령의 신청,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<u>보수는,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.</u> 다만, 가압류,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.</p> <p>제4조(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)</p> | <p>제3조(산입할 보수의 기준)</p> <p>①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보수액(다음부터 “지급보수액”이라 한다)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<u>&lt;후단삭제&gt;</u>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,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제4조(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)</p> |

① (생략)

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.

제5조(보수의 감액)

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.

[별표]

| 소송목적의 값  |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|
|--|---------------|
| <신설>   |               |
| 2,000만원까지 부분   | 10%           |
| 2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<br>[20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x $\frac{8}{100}$ ] | 8%            |
| 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<br>[4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x $\frac{6}{100}$ ]     | 6%            |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-----  
-----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-----.

제5조(보수의 감액)

-----  
----- 무변론 판결, 이행권고결정-----  
-----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,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-----  
-----.

[별표]

|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 |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300만원까지 부분   | 30만원                 |
| 300만원을 초과하여 2,000만원까지 부분<br>[3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300만원) x $\frac{10}{100}$ ]     | 10%                  |
| 2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<br>[20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,000만원) x $\frac{8}{100}$ ] | 8%                   |
| 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<br>[4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,000만원) x $\frac{6}{100}$ ]     | 6%                   |

|   |      |   |      |
|---|------|---|------|
|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<br>[7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원)<br>$\times \frac{4}{100}$ ]     | 4%   |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<br>[7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<br>원) $\times \frac{4}{100}$ ]        | 4%   |
|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<br>[9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5<br>천만원) $\times \frac{2}{100}$ ] | 2%   |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<br>분<br>[9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1억5<br>천만원) $\times \frac{2}{100}$ ] | 2%   |
|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<br>[1,0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<br>원) $\times \frac{1}{100}$ ]     | 1%   |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<br>[1,0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2억<br>원) $\times \frac{1}{100}$ ]         | 1%   |
|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<br>[1,3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억<br>원) $\times \frac{0.5}{100}$ ]         | 0.5% |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<br>[1,340만원 + (소송목적의 값 - 5억<br>원) $\times \frac{0.5}{100}$ ]             | 0.5% |

<의안 소관 부서명>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|      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| (02) 3480 - 1580 |